김포시 골재 위탁판매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제3290호 제출년월일 2023. 9. 4. 제 출 자 김 포 시 장

1. 심사경과

○ 본 안건은 9월 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김포시 골재 위탁판매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조례」는 김포시에서 경영 수익사업으로 시행하는 골재채취 직영사업시 위탁판매수수료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사업 종료로 존치 실익이 없기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김포시 골재 위탁판매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조례」 폐지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김포시에서 시행한 골재채취 직영사업이 종료('1998 ~ '2012)되어 관련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으며, 위탁계약 조건 등이 현재 시점과 맞지 않는 사항들을 고려해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